

## 충청북도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 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1년 12월 21일

나. 회부일자 : 1991년 12월 23일

3. 제안이유

- 적용시한이 만료(1991. 12. 31)됨에 따른 시한연장임
- 목적 :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자활지원

4. 주요골자

- 다음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면제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등기하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및 부속토지  
- 상이군경 및 그 유족이 자활용사촌내에 취득, 등기하는 주택과 부속토지

5. 검토의견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6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 및 등기하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상이군경 및 그 유족이 자활용사촌내에 취득 및 등기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각각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 이 조례의 시행기간이 199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저 소득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